

Korean Tax Update

July 2016, Issue 25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2016 년 개정세법(안)

- 2016 개정세법 주요사항(법인세)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재편

- 세액공제 대상을 11 개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20% ~ 30%로 인상
 (*) 11 개 신산업 :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에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추가
- 신약개발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신약에 대한 임상 1·2 상 및 국내수행 임상 3 상 시험과 화합물신약에 대한 국내수행 임상 3 상 시험을 추가
- 문화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에 종전 게임·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외에 만화·웹툰·음악 콘텐츠 제작기술을 추가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해 10%(중견 8%, 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 5%이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등 요건, 상시근로자수 유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 등 법정 요건 충족 필요)

(3)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 제작비용(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에 대해 10%(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5% 상당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취득 시 공제율을 인상(7%→10%)
- 세액공제·세액감면 대상 기술취득·이전·대여 대상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으로 통일

(5)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각종 고용·투자·R&D 세제지원 대상을 소비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6)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상향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 인당 500 만원 인상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중견기업 추가
적용요건 완화 (부분 복귀)	국내사업장이 없 을 것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해외 생산량 등 50%이상 감축시 허용
적용지역 확대	수도권 밖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성장관리·자연보전 권역으로 이전 허용)

(8) 벤처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신설(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요건 완화(80%초과 → 50%초과)
 -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비율 요건 완화(지분 50%초과 → 지분 30%초과 + 경영권인수)
 - 피합병·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배정 금지 → 주식배정 허용

(9) 해운기업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16~'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 허용

(10)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 신설

재무구조개선계획·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채권가액 - 주식 시가)을 출자전환 시점에서 손금산입 허용

(11)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적격합병요건 완화(합병대가 중 주식 80%이상 배정 → 70% 이상 배정)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하여 적격합병시 사후관리(합병법인이 합병 후 2 년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50%이상 처분·미사용시 사업폐지 간주) 적용 배제
-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익금불산입한 후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시 익금산입) 대상에 추가
-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주식처분에도 불구하고 과세이연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사유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교환을 추가
- 주식의포괄적교환시 교환대상법인과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있으나, 사업재편계획

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에는 계열회사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이연을 허용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 인수·변제 및 자회사에 자산증여시 채무 인수·변제액 및 증여자산가액 비용인정 한도(자회사의 이월결손금) 폐지

(12)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시 지분연속성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 완화(지분율 50% 이상 계속 유지 → 3년간 50%이상 유지)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 배제하고 과세이연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범위를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모든 유형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교환 등)으로 확대
- 적격합병 후 5년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해 합병·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본래 사업에서만 공제하는 범위를 자산처분손실 총액(처분시 시가 - 장부가액)에서 합병시 내재손실(합병시 시가 - 장부가액)로 축소하여 합병 후 시가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은 제한 없이 전체사업에서 공제가능
-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이상 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외국기업지배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업(해외자회사) 주식
- 합병 후 구분경리 면제 동일사업 범위 확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 세분류)
- 적격합병요건과 무관하게 과세이연 허용되는 범위에 완전자회사간 합병을 추가
- 분할합병·포괄적주식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분할대가 중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식이 80%이상 배정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80%이상 배정
 -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80%이상 배정 →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80%이상 배정

(13)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 조정 (현행 : 투자·임금증가·배당 1:1:1 → 개정 : 1:1.5:0.8)
-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의 전환을 허용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

(14)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범위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미분양주택 유통화에 따른 채무보증 포함)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1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해외진출사업비(건물임차·인테리어비용, 의료기기 리스료, 전산기기 임차료, 건설팅 비용, 법률검토 비용, 광고료 등)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허용

(16)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주식액면가액의 2% → 1%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의 2%(지연제출시 1%) → 1%(0.5%)
-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 0.5%) → 0.5%(0.3%)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17)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각사업연도소득의 80%) 적용 제외 기업에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를 추가

(18)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액감면을 신성장산업 위주로 재편

- 세액감면 대상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과 일치
- 감면소득 범위를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사업의 소득 중 개별기술이 사용된 비율로 하되, 개별기술 사용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전부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 감면한도를 종전 90%(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40%)에서 100%(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50%)로 상향
- 감면요건에 종전 공장·사업장 설치·운영요건 외에 최소투자금액 등의 요건을 추가

(19)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각사업연도소득의 80%)

(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기술용역 등이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여 지급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규정 신설

(2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기한을 종전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2)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 제출대상: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 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 (다만,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에게 제출의무 부여)
- 작성내용: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등

- 제출기한: 모회사의 사업연도말로부터 12 개월 이내

(23) APA 관련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및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분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법인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말로부터 12 개월)

(24)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그 신청절차일로부터 1 년 내에 국세·지방세 부과 가능하도록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 적용대상 추가

(25) 상호합의신청권자 범위 확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 모든 비거주자·외국법인

• **2016 개정세법 주요사항(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추가

(2)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 (기존: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 억원 이상 중소기업)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

(4) 세금계산서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 구분 기준일을 종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 변경

(5)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을 통해 용역을 공급할 경우 중개인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

(6)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1 회 구매금액 200 만원 이하에서 500 만원 이하로 인상

• **2016 개정세법 주요사항(상속세및증여세)**

(1)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전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재산을 증여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수증자(비거주자)에서 증여자(거주자)로 전환

(2)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 보완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자시점에 신주를 고가 또는 저가 발행함에 따라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1 차로 과세한 후 추후 전환권 등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전환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과세

(3)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을 시혜법인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4)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의료법인 및 대학은 각각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회계기준 적용 가능)
- 자산총액 100 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및 학교법인 제외)이 외부회계감사 불이행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의 0.07%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규정 신설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 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5%, 10%)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

(5)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
-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

(6)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

-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 증여자산 평가가액으로 인정 (현재는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심의)
-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평가기준일 전후 각 2 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
-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2 개월 이내에 매매정지·관리종목의 지정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7) 상속·증여세에 적용되는 특례 제척기간 적용 범위 확대

50 억원 초과 재산에 대해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날부터 1 년에 해당하는 특례 제척기간을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

• **2016 개정세법 주요사항(소득세)**

(1)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

- 코스피 : 지분을 1%, 종목별 보유액 25 억원 → 1%, 15 억원

- 코스닥 :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 억원 → 2%, 15 억원
- 코넥스 : 지분율 4%, 종목별 보유액 10 억원 (현행 유지)

(2)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 조정

- 지분율: 2%이상(2017.1.1.부터 1%이상) → 4%이상(2017.1.1.부터 적용)
- 시가총액: 50 억원이상(2017.1.1.부터 25 억원 이상) → 15 억원이상(2018.4.1.부터 적용)

(3) 국외전출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거주자(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는 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조정

-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대상금액에 포함)
-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총급여액 1.2 억원 초과시 200 만원 한도 적용)

(5)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고배당기업의 주주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종전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 세액공제(한도 2 천만원)로 전환하고 해당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조정

종전 특례세율 17% → 19%로 인상

• **2016 개정세법 주요사항(기타)**

(1)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인하(0.5% → 0.3%)

(2) 교육세 관련 가산세 적용 대상 조정

종전 교육세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금융·보험업자 신고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3)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세불복절차 정비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4) 면세점 제도개선

- 특허기간을 연장(5년 → 10년)하고 특허기간 갱신을 허용
- 특허수수료 인상(매출액의 0.05% → 매출 규모별 0.1% ~ 1%, 단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0.01% 유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 제한 등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제 강화

[예규·판례]

[판례 1] 카지노회사의 콤프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 두 44936 판결

- 콤프 비용은 카지노업계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오랫동안 제공되어 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카지노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영업관행으로 인정하되 그 지급범위를 제한하고 증빙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외판촉비는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접대비에 해당함.

[심판례 1]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직원 임대용 신축 아파트를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 지 185, 2016.06.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 조 제 2 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원 임대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판례 2] 고속도로휴게소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6 지 0550, 2016.06.30

- 도로구역인 이 건 고속도로 휴게소토지는「도로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고,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경부고속국도 등 25 개 노선에 대한 도면고시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완료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3] 발전소 신축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4 지 0902, 2016.06.23

- 화력발전소 제 7·8호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220V/110V 전기설비는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전원과 달리 발전시설의 동결방지설비(EHT), 콘트롤판넬(MCC), 주제어계통(DCS), 무정전 전원공급시스템(UPS)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필수 전원으로서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닌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생산설비의 설치에 해당하는 해당 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함.

[예규 1]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

재법인-676, 2016.07.12

-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 461 조의 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 18 조 제 8 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예규 2]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보험회사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령법인-3779, 2016.06.23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46 조의 3 제 2 항 제 2 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 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함.

[예규 3] 상·하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기계장치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기계장치 중 하나가 중고품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법인-3266, 2016.07.12

- 상체 및 하체 부분을 별도로 제조하는 회사가 다수이며, 제품생산을 위해 반드시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상·하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기계장치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때, 각각의 기계장치 중 하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6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